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04호

2026년도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공개모집 공고

2026년도 제6회 전북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주요업무

임용예정직위	임용가능직급	임용인원	주 요 업 무 내 용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1명	○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업무 총괄 -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업무 총괄 - 학교 운영 및 학사관리 종합기획·조정 - 교과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개방형직위)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라. 「전북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마.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교장 자격기준)
사.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제1항(교장 자격인정기준)

3 임용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4 응시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행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자격요건

☞ 필수요건

1) 필수자격증 : 유 (교장 자격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지 이상 해당자)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1](교장·교감 자격 기준) 해당 자

①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②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③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⑤ 공모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별표2] (교장·원장 자격인정기준) 해당 자

- 초·중등교육법 [별표1] <중등학교> 교장 제2호 인정기준 -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9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② 15년이상의 초등학교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2) 기타필수요건 : 유

(요건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요건 2) 교육공무원법 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정년규정에 의하여 62세 이하인 자

▸ **위 필수요건**(「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1],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별표2]) **자격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도 설정 가능

공무원 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실적 요건

· 학교 교육 및 성인여성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경험 등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학교 교육 운영 및 학사관리 종합기획·조정 분야

5 보수수준

가. 연 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지급(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 고려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개방형 4호	-	70,490천원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나.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6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임용자격 요건을 심사

나. 2차시험 : 서류심사+면접시험(적격성 심사)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적격성 심사

* 서류심사 : 지원심사, 경력증빙서류, 자기소개서 등 응시자 제출서류와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 중장기적인 사업계획과 개인의 잠재능력 등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 심사 및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 선발심사위원회에서는 임용후보자 2~3명을 선발만 하고, 최종합격자는 결정하지 않음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선발심사위원회 심사결과는 발표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별도 공고 예정

7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6. 11. 24.(화) ~ 11. 30.(월), 18:00까지 /5일간 *주말 및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2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 ☞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공무원채용팀으로 연락바람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 주소 : (우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총무과 공무원채용팀(2층)
>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063-280-4219)
>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현금×)

나. 1차시험(서류전형) 형식요건심사 : '26. 12. 3.(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 공고문(일정 안내 등) : 12. 4.(금) / 도 홈페이지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자기검증 기술서」 작성 및 제출(별도 공고 안내)

다. 2차시험(서류+면접시험) 적격성심사 : '26. 12. 8.(화) 예정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5분 내외) / 외국어(영어)·직무관련 면접(20분 정도)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6. 12월중, 개별통지(별도, 공고 예정)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서식 1호)

② 응시자격요건 응시자 의견서 1부(별지서식 2호)

③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3호)

- 응시수수료 :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10천원

※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NH농협은행 구입(09:00~16:00) *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 접수 마감일까지의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및 통상환증서(우편접수시)가 없는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④ **이력서 1부**(별지서식 4호)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⑤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5호)

⑥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도서식 없음)

- 직무수행계획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임용분야 직무수행요건 명세서를 참고하여 작성

⑦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⑧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공고일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업무분장 내부 결재 및 분장표 제출

- 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별지서식 8호)
- 시간제,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폐업자정보 사실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
-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유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⑨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①, ② 모두 제출)

①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 증명서(국세청 발급) 1부 ※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해당연도 모두 제출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⑪ **주민등록초본 1부**(남여 모두 제출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⑫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 응시원서 접수시 **원본지참** 제시

②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

③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8호)

9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하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전북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바.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사.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자.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전북소식(시험채용-임기제/개방형직위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차.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임용후보자 추천자 중 차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관련 문의 : 총무과 공무원채용팀(☎ 063-280-4219)
- 업무관련 문의

임용직위	임용직급	담당부서	연 락 처	비 고
도립여성 중고등학교장	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도립여성 중고등학교	☎063-290-6896	

참고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Ⅰ. 기본사항

1. 소속기관	2. 직위명	3.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보직가능직급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립 여성중고등학교	전북특별자치도립 여성중고등학교장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1. 학교운영 및 학사관리 종합기획·조정	20
2. 교과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자격취득 및 취업연계지도	20
3.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특별활동 지도	20
4. 학교 홍보 및 신입생 모집	10
5. 학생보건, 구내식당 운영 등 교육환경개선	10
6. 시간제강사 선발 및 관리	10
7. 기초학력 보충학습 등	10

6. 관련분야
○ 학교 교육 운영 및 학사관리 종합기획・조정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1. 교육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및 성인여성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경험
3. 학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무 능력

Ⅱ. 직무수행요건

<table>
<tr><th colspan="2">임용자격요건</th></tr>
<tr><td>1. 필수요건</td><td>① 학력제한 □ 무 ■ 유
(학력 요구수준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② 필수자격증 □ 무 ■ 유
(종류 및 등급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1](교장·교감 자격 기준) 해당 자
2.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별표2] (교장·원장 자격인정기준) 해당 자
③ 기타필수요건 □ 무 ■ 유
(요 건)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2.「교육공무원법」제4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정년규정에 의하여 62세 이하인 자</td></tr>
<tr><td rowspan="5">2. 경력 또는 실적요건</td><td>1) 경력요건</td></tr>
<tr><td>(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td></tr>
<tr><td>(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td></tr>
<tr><td>(경력 기준)
•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 학교 교육 운영 및 학사관리 종합기획·조정 분야</td></tr>
<tr><td>2) 실적요건</td></tr>
<tr><td>학교 교육 및 성인여성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 실무경험 등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td></tr>
</table>

3. 능력요건	① 전문가적 능력 i) 교육 또는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ii) 교육·교육행정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능력 iii) 교육·교육행정에 대한 종합 판단력 및 정책 결정 능력
	② 전략적 리더십 i) 교육행정 수행에 대한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ii)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 및 전략 수립 능력 iii) 교육행정에 대한 유연하고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③ 변화관리 능력 i) 문제에 대한 사전 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ii)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 iii) 고객 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 능력
	④ 조직관리 능력 i)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노력 ii) 업무 개선 능력 iii) 자원 활용 능력
	⑤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i) 교직원, 교사, 학생 등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 ii) 졸업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iii)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4. 특별요건	① 자격증 ■무 □유 (종류 및 등급)
	② 외국어 □무 ■유 (영어)
	③ 정보화 능력 □무 ■유 (워드프로세서 및 인터넷 활용 능력)
	④ 기타 특별요건 ■무 □유 (요 건 :)